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: 2025. 1. .

발 의 자:최훈종 의원

1. 제안이유

- 가. 관내 공동주택과 거주민이 증가하며, 이에 따른 공동주택 주민은 단지 관리와 재정의 운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
- 나. 「공동주택 관리법」에 따른 전자투표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 확대(안 제3조)
 - 공동주택 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(안 제3제제2항제4호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 내 갈등 및 민원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민주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간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.